학 · 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

(최종 개정일 2023.9.1)

- 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제37조(학위과정의 연계) 및 학칙시행규칙(학사과정) 제48조의2(학·석사 연계과정 설치·운영)에 근거한 학·석사연계과정(이하 "연계과정"이라 한다)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연계과정 설치 학과(부) 및 인원)** ①연계과정 설치 설치 학과(부)는 자연과학대학, 공과대학, 예술체육대학, ICT융합대학 소속학과로 한다.(변경 2023.09.01.)
 - ②선발 인원은 석사 학위과정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대학원장이 정한다.
- 제3조(지원자격 및 신청) ①연계과정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.
 - 1.우리대학교 학·석사 연계과정 설치 학과(부)에 재학 중인 자
 - 2.지원 당시 전체 성적 평균평점이 3.0이상인 자
 - 3.7개 학기 이내에 학사 졸업요건 취득이 가능한 자
 - ②지원 시기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로 하며, 연계과정 지원서는 단과대학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자 제출서류) 연계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학 · 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1부
 - 2.성적증명서 1부
 - 3.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 추천서 1부
- 제5조(선발) 연계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원에서 심사 및 선발한 후 선발결과를 교육지원처 장에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심사방법 및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**제6조(수업연한)**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, 각 학위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학사학위과정 : 3.5년(7개 학기)

2.석사학위과정 : 1.5년(3개 학기)

- 제7조(수강신청)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사과정 중 선발된 학기부터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- 제8조(등록)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7학기까지 학사과정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9조(성적) 학사과정 교과목의 성적은 학사과정의 성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여하고 대학원 교

과목의 성적은 해당 대학원의 성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부여한다.

- 제10조(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조기졸업) 연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학사과정 조기졸업 조건은 평점 3.5 이상에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 다만, 연계과정 이수자로서 대학원의 입학이 허가되고 대학원 등록을 필한자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11조(자격상실) ①연계과정을 이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연계과 정 이수 자격을 상실한다.
 - 1.연계과정 이수 중 연계과정 포기를 신청하는 경우
 - 2.7학기 수료 후 학사과정 조기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- 3.대학원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
 - ②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연계과정 이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4학년 2학기(8학기) 전액 등록을 하여야 하고, 학칙 및 학사과정 학칙시행 규칙에 따라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7학기 수료후 학사과정 학칙시행 규칙에 따른 조기졸업 조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는 학사과정의 조기졸업을 인정한다.
- 제12조(졸업학점,수료학점)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학점은 학사과정 학칙 시행규칙, 석사과 정 수료학점은 대학원 학칙 시행규칙을 따른다.
- 제13조(규정의 적용) 본 내규에서 정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, 학칙 시행규칙(학사과정), 학사처리(학사과정)에 관한 내규가 적용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(신설 2017.9.1., 삭제 2023.9.1.)